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608

발의연월일: 2024. 8. 7.

발 의 자:백혜련·조 국·이기헌

황정아 • 염태영 • 이병진

민병덕 · 안태준 · 윤종군

이재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 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,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 음.

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, 거래소 이용자들이 거래소의 운영과정상문제점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,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6항, 제15조제

10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검 사결과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2항,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치의 주요 내용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·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그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조치 또는 조치요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5조(금융회사등의 감독·검사	제15조(금융회사등의 감독·검사		
등) ① ~ ⑤ (생 략)	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		
⑥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	6		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			
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			
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			
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			
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			
검사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			
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 <u><후</u>			
<u>단 신설></u>			
	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위탁		
	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		
	과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		
	치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		
	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	
⑦ ~ ⑨ (생 략)	⑦ ~ ⑨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⑪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2항,		
	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의		
	주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		
	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		
	<u>수 있다.</u>		